

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

## 3. 주요내용

- 「법」 제36조제2항, 제49조제4항 및 「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,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6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된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(안 제90조제2항)

## 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 제목을 “등록사무처리”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0조(<u>준용규정</u>) 재외국민 가족 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·읍·면 및 시·읍·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, 제21조, 제23조, 제28조, 제32조, 제35조, 제40조, 제41조,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, 제49조, 제51조, 제55조, 제57조, 제60조, 제64조, 제65조,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, 제85조를 준용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0조(<u>등록사무처리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.</u></p>

<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